





		미래창조 금융따뜻한 금융				
금융위원회	보도	2017.5.2.(화) 배포	시	배포	2017.5.2(화)	•튼튼한 금융
책 임 자		금융위 보험과장 주 형(02-2100-2960)	담 당 자	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2)	

제 목 : 「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국무회의 통과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에서 발표한 과제를 끝까지 차질없이 추진

- 5.2일(화), 「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
-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'15.10월에 발표한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(15.10월)」을 차질없이 완수하기 위한 것임
-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 **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**에 대해서는 '15.11월~'16.4월중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였고,
- '17.5.2일, 국무회의에서 「보험업법 개정안」이 통과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
- 금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'자율과 경쟁'을 촉진하여 그 혜택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
- (자산운용 자율성 제고) 외화자산・부동산・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사전적 한도규제*를 폐지하고 사후 감독체계로 전환
 - * 외국환(총자산의 30%), 파생상품(총자산의 6%), 부동산(총자산 15%)
- ② (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) 벤처캐피탈, 리츠, SOC 투융자 등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'**사전신고제'를 '사후보고제'로 전환**
- ③ (보험상품 자율화 확대)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(방카상품)를 폐지하고, '원칙적 자율판매 + 예외적 신고·사후감독' 원칙을 명확화
- ④ (보험상품 이해도 제고)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안내 자료를 만들도록 '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' 신설
- (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의무 실효성 제고)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**중복**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,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1. 개정배경 및 그간의 경과

- □ '15.10월,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을 발표하고 계획된 일정(♠하위규정 개정 → ❷법률개정)에 따라 차근차근 개혁 추진
 - 보험산업에 '자율'과 '혁신', '경쟁'을 불어넣기 위해 오랜기간 하위규정에서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부터 우선 개선('15.11월~'16.4월)
- □ 당초 시행령·감독규정 등 **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**하기로 한 대부분의 조치사항은 '15.11월, '16.4.1일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완료
 - (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) 하위규정에 열거된 상품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, 복잡한 상품 설계기준 완화(16.4.1 개정 완료)
 - **(상품가격 자율화 및 공시 강화)** 표준이율 폐지, 보험요율 자율성 확대('16.1.1 시행), '보험다모아' 출범을 통한 **가격경쟁 촉진**('15.11.30)
- (새로운 환경에 대응)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, 기업성 보험 요율 자유화,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('16.4.1 개정 완료)
- □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*에 대해서는 '16.6.28일~8.8일까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
 - * ① 보험상품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 법률 명확화.
 - ② 외환, 파생상품,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 폐지,
 - ③ PEF, 리츠 등 투자형 자회사 사전 신고제 완화 등
 - '16.11월, 규제개혁위원회 심사, 17.4.23일,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차관회의(4.27일), 국무회의(5.2일) 통과
- ⇒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서 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 중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

2.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

■ 보험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

1.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

- □ (현행) 보험업법상 부동산, 외국환, 파생상품 등에 대한 **직접적・ 사전적 한도 규제**로 보험회사의 **효과적인 자산운용 제약**
 - * 외국환(총자산의 30%), 파생상품(총자산의 6%), 부동산(총자산 15%)
- EU, 호주, 영국,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사전적 한도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 대부분 폐지, **지급여력제도** 등을 통해 **사후 건전성 감독**
- □ (개선) **자산 유형별로 한도를** 정하고 있는 **모든 규제를 폐지**하고 건전성에 대한 **사후감독 체계**로 전환
-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(Risk Based Capital)의 신용
 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 강화
 - * '17.5월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특정자산 쏠림 리스크에 대비하여 신용위험계수 상향조정 방안 마련 예정
- **대주주 관련 한도규제** 및 은행법·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업권 에도 있는 **동일인 여신한도 등은 현행 존치**

<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폐지 현황 >

현 행	개정안
■ 동일 개인·법인 신용공여 : 총자산 3%	■ (존치)
■ 동일 법인이 발행한 채권.주식 소유 : 총자산 7%	■ (존치)
■ 동일 차주 신용공여+채권·주식 소유 : 총자산 12%	■ (존치)
■ 동일 개인·법인 등 거액 신용공여 : 총자산 20%	■ (존치)
■ 대주주·자회사 신용공여 : min(총자산 2%, 자기자본 40%)	■ (존치)
■ 대주주·자회사 주식·채권 : min(총자산 3%, 자기자본 60%)	■ (존치)
■ 자회사 신용공여 : 자기자본 10%	■ (존치)
■ 부동산 : 총자산 15%	■ 폐지
■ 외국환 : 총자산 30%	■ 폐지
■ 파생거래 위탁증거금 : 총자산 6%	폐지

2.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

- □ (현행) 보험회사의 모든 **자회사*** 소유시 **금융위 승인·사전신고**로 인해 **불필요한 절차적 부담** 발생
 - *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% 소유시 자회사로 간주
- 특히, SOC투자, 벤처캐피탈, 리츠 등 투자목적 자회사(15%이상 지분)에 대해서도 **사전신고**토록 하여 **적시성 있는 투자기회를 제약**
- ☐ (개선) **투자목적 자회사**에 대한 사전신고를 **사후보고로 전환**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**별도 숭인절차 면제**
 - (**사후보고**) 벤처캐피탈, 부동산 투자회사, SOC투융자 회사는 **투자 목적**에서 보유하는 수단(Vehicle)이므로 **사후보고**로 완화
- (신고·보고 불요) 금융회사가 대주주 요건을 심사받고 설립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별도 신고절차 면제*
 - * 금융회사의 설립근거 법령에 따른 허가시 보험업법상 별도의 자회사 승인.신고 절차 면제 → 금융위-원 부서간 협조로 One-stop 심사
- (**자회사 요건은 충족 필요**) 절차 간소화 시에도 자회사 소유시 보험회사 및 자회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*은 지속 충족해야 함
 - * 보험회사 재무건전성, 자회사의 재무상태 적정성, 자산운용한도 충족

3.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

- □ (현행) '16.4.1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등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으나,
- 아직, 법률상 불필요한 사전신고 의무가 남아 있고, 법문언상 '사전신고'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'사후감독 대상'도 다소 광범위하게 규율되어 있어 법 - 현실간 괴리가 발생

- □ (개선) 불필요한 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*를 폐지하는 한편, 「자율판매 + 예외적 신고** 또는 사후감독」의 원칙을 명확화
 - *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폐지
 - ** ①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, ②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의 사전검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
- □ 로드맵 시행 이전(14년 기준)에는 보험회사가 약 8,100개 상품 중에서 **1,584건을 사전에 신고**해야 했으나,
 -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'16년 중에는 339건을 신고하였고, 금번 법률개정을 통해서는 약 300건 내외 수준(↓10%)까지 감소할 전망

4.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

- □ (현행)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등을 받은 겸영업무,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영위하는 부수업무도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
- ☐ (개선) 별도의 사전신고 필요성이 낮은 **겸영·부수업무**에 대해서는 **사전신고 의무 폐지**
- (겸영업무)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**인가허가·등록 등을 받은** 금융업무는 보험업법에 따른 겸영업무 **사전 신고의무를 폐지**
- (부수업무) **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**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

☑ 보험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

1. 실손의료보험 중복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

- □ (현행) 보험업법상 소비자의 중복 보험료 낭비* 등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등 모집인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중복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료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토록 규정
 - * 실손의료보험은 다수 보험이 체결되어도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회사간 비례보상
 - *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 추이 : (15.4말) 23.3만명 → (16년말) 14.4만명

- 그러나, 동 의무 위반시 과태료 등 **금전적 제재를 부과**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**규제의 실효성이 미흡**
- □ (개선)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**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**소비자 보호 강화**
 - **보험회사, 보험회사 임직원 및 모집종사자** 등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**차등적으로 부과**^{*}
 - * 보험회사 5천만원, 보험회사 임직원 2천만원, 모집종사자 1천만원 한도

2.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

□ (현행)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가 **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**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중

<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>

- 시행기관 : 보험개발원, 평가주기 : 연 2회
- 평가주체 : 유관기관 장 등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9명
- 금감원장(2명), 한국소비자원 長(2명), 보험개발원장(1명) 추천 보험소비자 5명
- 생손보협회 長 추천 <u>모집종사자(2명)</u>, 보험연구원장 추천 <u>법률전문가(1명)</u> 보험개발원장 추천 보험 전문가(1명) 등
- 기능 :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이해도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권고
- 그러나, 실제 소비자는 보험상품 **내용 확인 및 가입여부 판단을** 보험약관 보다는 **권유 단계에서 제공받는 보험 안내자료***에 따라 결정하므로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
 - * 보험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상품 관련 자료로서, ①핵심 상품 설명서, ②상품요약서, ③변액보험운용설명서, ④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을 의미
- ☐ (개선)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
- 보험약관뿐만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, 상품요약서,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

3. 보험계약 이전시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

- □ (현행) 현행 법령상 보험회사는 他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려는 경우, 사전*에 대차대조표 및 계약이전 요지 등을 공고
 - *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
 - 그러나, **다수 보험계약자**들은 이 공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, 계약이전에 대한 **이의 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**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※ 계약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**이전될 보험의 계약자 총수의 10%를 초과**하는 경우 등에는 **보험계약 이전 不**可
- 특히, 보험상품은 **만기가 장기인 상품**이 많고. **보험금 청구**, **상담 등 유지·관리** 측면에서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**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**
- □ (개선) 공고뿐만 아니라 **이메일, 휴대폰 문자, 우편발송** 등의 수단(시행령)을 통해 **개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**토록 의무 신설
-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·관리하는 **보험회사가** 변경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의제기 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

☑ 보험회사의 투명성 강화 등 그간의 미비점 개선

1. 공제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강화

- □ (현행) 금융위원회는 공제업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**공제의 건전성 확보에는 미흡**
- 특히, 공제업 운영의 근거 법령에서 공제기관의 검사, 감독기준 등과 관련하여 **금융위와 협의 규정이 미비**한 경우도 다수
 - * '15년말 현재, 76개 공제업 중 근거법령에 금융당국과 감독.검사 협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62개(약 81.5%)

- 이에 따라 **공제업 검사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**에서 재무건전성 감독ㆍ평가 등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필요
- □ (개선) 금융위(금감원)와 **공제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** 공제기관 **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협의 근거** 마련
- 금융위가 공제기관의 소관 부처에 대해 현행 **공제상품** 뿐만 아니라 **재무건정성 관련 혐의까지 요청**할 수 있도록 함
- 소관 **중앙행정기관**이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**금융위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**할 수 있도록 함

2.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제3자 외부검증 의무화

- □ (현행) IFRS17 2단계 시행('21년 예정)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보완이 필요
- 책임준비금(부채) 시가평가 제도 등은 미래 금리예측 기법 등 복잡한 계량 기법이 접목된 회계처리 기준임
-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3자를 통한 객관적인 외부 검증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
- □ (개선) 보험회사가 **책임준비금 산출·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해** 외부 보험계리업자* 등을 통해 검증받도록 의무화
 - * 외부계리업자 현황 : 보험개발원, 법인 계리업자(15개), 개인 계리사업자(6개)
- **보험회사의 자산규모**, 보험회사별 **중목 특성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의무화 대상을 확정**할 계획(시행령 개정 사항)

3. 외국 보험회사 관련 미비점 개선

(현행)	현행	보험업	법상	외국보험	회사	지점의	현지법	인 :	전환 과정
에서 불	합리형	한 경영	단절,	소비자	피해	등이	발생할	소지	

-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이 **새롭게 법인을 신설**하고 그 법인에 지점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*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
 - * 보험계약 이전 결의 후, 계약이전 및 신설 법인의 보험업 허가 완료시 까지
- ㅇ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, 기존 계약자들도 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
- ☐ (개선) 외국계 보험회사 국내지점의 **현지법인 전환** 등과 같이 보험회사 부실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면 新계약 체결을 허용

3. 향후 계획

- □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중 국회 제출
- □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금융위원회 대 변 인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prfsc@korea.kr

